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12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30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5. 12. 1~12. 30)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12.5	녹즙기	내방	중국에 자체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PL법 관련 사고시 배상하면 나중에 중국공장에서 배상해야 하나?	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12.11	전동공구	전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소비자 임의로 개조한 다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이 경우는 PL법에 저촉이 안됨
12.12	전기매트	내방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12.15	전기뜸질기	내방	주요 화재원인이 부품에 있는데, 보상 책임을 부품업체에 전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전 계약서 작성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것
12.17	전기청소기	내방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 사고발생시 보상해주고,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을 계약서에 넣으려 하는데, 그 문구를 완전하고 간략하게 만들고 싶음	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 협회 차원에서 조정이나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 검토중
12.19	전기청소기	전화	외국에서 사온 전기제품은 사고발생시 PL법에 해당되는지?	국내 PL법에는 해당안됨
12.26	전기면도기	내방	내구연한과 소멸시효	내구연한이 5년정도라 해도 소멸 시효의 10년이란 기간은 관리해야함
12.28	엠프, 스피커	내방	제품 및 코드에 붙이는 PL관련 주의, 경고 사항의 글씨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나?	국내 규정은 없음